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1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남동 1548-11 인근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2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북동 1261-100 인근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3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서동 2918-5 인근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4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서동 2917-14 옆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5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서동 2898-8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6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서2로68번길 51 인근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7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서2로25번길 2 인근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 제2026-8호

행정대집행 고 고 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친환경위생과-8341(2026.5.6.)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-983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2026.5.21.(목)까지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 고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.6.8.(월)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48조,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고 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, 폐기물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☎032-760-7697로 연락바랍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운서동 2904-14 인근	의류수거함	의류수거함 1개	철거

2026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